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3. 13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. 3. 13

다. 상정일자 : 제 11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 1차 총무위원회(2003. 3. 20)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구용대 세무과장)

가. 제안사유

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시행상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·보완하여 지방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법인(단체 포함)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반면,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있어 과세형평상 불합리 하므로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부 면제토록 함 (안 제5조)
- 2003. 1. 1 “도시계획법”이 폐지되고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 (안 제11조)
- 2002. 1. 26 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”이 폐지되고, 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”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 (안 제14조)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
나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30조 32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일부납세자의 불균등한 사항을 형평에 맞게 개정하여 공평과세를 하기 위함과(제5조)
-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법령이 폐지되고, 새로운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령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과(도시계획법 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→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)
-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 지침에 의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'2005. 12. 31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